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외거주 군인의 작전·훈련시 급식비 미공제〉

■ 유용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78호)

■ 황명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6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 취지	4
2. 검토 의견	5

I . 제안경위

1.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2478)

가.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2.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3868)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취지

-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유용원의원안”)과 황명선의원 대표 발의안(이하 “황명선의원안”)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 개정안들은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의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유용원의원안과 황명선의원안은 일부 자구의 차이가 있으나,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외거주 군인에게 급식과 관련하여 현물을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작전·훈련 등의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既 지급된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함.

2. 검토 의견

- 개정안들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외거주 군인에게 급식과 관련하여 현물을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작전·훈련 등의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既 지급된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유용원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제53조(실비변상) (생략)	제53조(실비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3조(실비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이 조에서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급식비”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도	③ 제2항의 단서에도

현행	유용원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u>불구하고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u>	<u>불구하고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u>

□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급식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53조에서 실비에 대한 변상¹⁾만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에 관해서는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²⁾에서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현물)을 지급하되 영외거주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현금(영외자급식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까지는 영내급식 인가간부³⁾에게는 영내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영외자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그 외 영내급식 비인가간부(영외거주 군인)에게는 영외자급식비(월 137,000원)를 지급해왔음.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을 사유로 영내 급식하는

1) 「군인사법」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2) 「군인급식규정」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임무수행상 3식을 영내급식하는 자(GP·GOP, 해·강안 근무자 등), 인원은 '24년 기준 25,236명

경우 아래의 끼니별 영내급식 단가만큼을 다음달 봉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해왔음.

[연도별 1일 기준 급식비 현황]

(단위: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일기준 영내급식비 단가	8,493	8,790	11,000	13,000	13,000
전년대비 증가율	6.0	3.5	25.1	18.2	0.0
영외자 1일기준 급식비 ⁴⁾	4,784	4,784	4,784	4,784	4,784
차액	3,709	4,006	6,216	8,216	8,216

자료: 국방부

[2024년 영내급식 단가]

구분	조식	중식	석식
단가	3,800원	4,900원	4,300원

자료: 국방부

□ 그런데, 최근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영내급식 비인가간부의 차감 급식비 부담액도 크게 증가⁵⁾함에 따라 훈련 중인 영외거주 간부에게 징수하는 급식비 차액의 과도한 부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음.⁶⁾

4) 영내급식 비인가간부(영외자) 일 급식비는 4,784원임(월 지급액 13만 7,000원×12를 연간 부식일수 344일로 나눔).

5) 영내급식 비인가간부(영외자) 일 급식비 4,784원은 영내급식 중식 단가인 4,900원에도 미치지 못함.

6) 간부 훈련시 영내급식비 개인부담 관련 언론보도(JTBC, '22.5.16.)

□ 이에 개정안은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게 함으로써 영외거주 간부에게 징수하는 급식비 차액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자 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작전·훈련 등의 경우에는 작전지를 벗어나 매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많아 사실상 영내급식이 강제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게 함으로써 작전·훈련 등에 참가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영내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영외거주 간부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둘째, 국가공무원이 근무지를 벗어나 출장을 가는 경우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식비 140,000원⁷⁾ 이외에 별도의 식비 지원⁸⁾을 받는 것과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0일간 훈련 다녀왔더니 ‘밥값 수십만원’ ... 군 간부들 ‘부글부글’〉

20일간 훈련을 다녀온 육군 간부들에게 군 당국이 수십만원의 식대를 청구해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간부 A씨는 최근 훈련을 다녀왔다가 약 22만원을 부대계좌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4월 8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참가한 육군 과학화훈련전투단 훈련의 식대로 22만 520원이 청구된 것입니다. (중략)

훈련 기간 중 약 9만 5,000원을 밥값으로 보전받고 13만원 가량을 사비로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훈련 중 지정된 식사를 하는 건데도 돈을 더 내야 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 다. (후략)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다음의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제53조제3항은 달리 말하면 현금과 현물을 함께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현행 「군인사법」 제53조의 실비변상(개정안 제53조제1항) 조항⁹⁾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을 넘어 중복 지급 문제의 우려가 있음.

둘째, 영외거주 간부는 현물과 현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영내급식 인가간부¹⁰⁾는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액급식비¹¹⁾를 규정하는 바,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안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음.

□ 참고로, 개정안 제53조제3항에 따라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훈련 중인 영외거주 군인에게 영내 급식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725억원(연평균 1,145억원)으로 추계됨.

9) 「군인사법」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10) 임무수행상 3식을 영내급식하는 자(GP·GOP, 해·강안 근무자 등), 인원은 '24년 기준 25,236명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훈련 중 영내급식 지급에 따른추가 재정소요	109,136	111,755	114,437	117,183	119,996	572,507

산출기준: 각 군별 훈련 예상 인원내 최소 훈련일수를 곱하여 연 급식인원을 산정(800만 6,137명). 훈련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영내 급식비 단가는 2024년 국방부 예산 급식비 단가 1일 13,000원으로 하고, 동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²⁾을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

□ 한편, 국방부는 2024년부터 작전·훈련 등에 참가하여 영내급식을 해야 하는 비인가(영외거주)간부에게 기존에 지급하는 영외자급식비(월 137,000원, 일일 기준 4,784원)를 초과한 금액¹³⁾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영내급식비가 하루 13,000원이므로, 그 차액을 보전해 비인가간부들이 별도의 급식비 부담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¹⁴⁾.

□ 따라서 개정안은 영외거주 군인의 작전·훈련시 징수하는 급식비 차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있지만, ① 실비변상을 넘어선 중복 지급으로 법 조항간의 충돌 문제, ② 영외거주 군인은 작전·훈련시 현물과 현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 있지만 GP·GOP, 해·강안 근무자등 영내급식이 불가피한 군인들은 영외자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 ③ 국가공무원은 급식비 관련 규정을

12) 2024년 2.4%, 2025년 2.2%, 2026년 2.2%, 2027년 2.1%, 2028년 2.1%, 2029년 2.1%

13) 1일을 영내에서 급식했다고 가정하면, 1일 영내급식비 13,000원과 일 급식비 4,784원의 차액인 8,216원을 지원함

14) 2024년 예산 133억원 반영, 2025년 예산 124억원 편성

대통령령에서 규율함을 고려할 때,

2024년 현재 「2024년도 국방부 급식방침」 제도(급식비 차액 지원)¹⁵⁾가
기 시행 중인 만큼, 급식비 차액 지원 제도의 시행 결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해 본 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부처 의견으로, 국방부는 작전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하여
현물과 현금을 중복지급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2024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른 급식비 차액 지원 제도처럼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급식하는 경우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작전 및 훈련 중 영내급식을 제공하면서 영외자급
식비를 모두 지급한다면 실비변상 규정의 취지를 넘어 중복 지
급하게 되는 문제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15) 「2024년도 국방부 급식방침」 영외자의 영내급식 관련: 영외자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액 4,784원을
월별로 현금 지급함. 다만 작전·훈련·부대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식 또는 자가
식사가 제한되어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끼니당 지급된 급식비를 초과한 금액은 영내자 급식비로 지원함.